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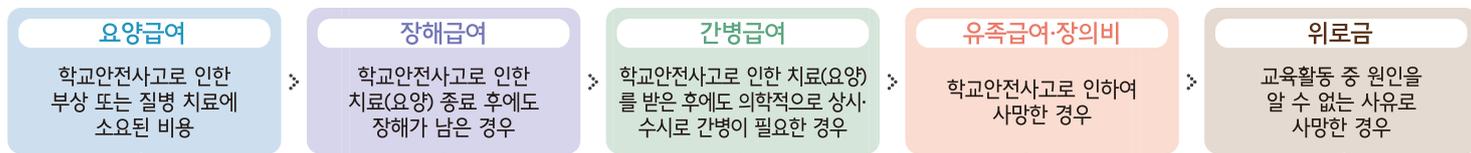
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!!

#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신청하세요!

『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**생명·신체에 입은 피해**를 신속·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.

※ 『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하여 일부 내용 변경 (’20. 7. 14, ’20. 7. 16)

## 공제급여의 종류



『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공제급여 종류별 산정·지급

## 공제급여의 종류 중 '요양급여' [치료 비용] 청구 방법

### 01 학교안전사고 발생

- 사고통지는 공제가입자인 **학교장**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**지체 없이(7일 이내)** 공제회로 통보
- 통보 방법은 아래 방법 중 선택
  - ①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→ 사고 등록 → 출력하여 학교장 서명 → 스캔하여 파일 첨부 → 통보 처리
  - [통보 미처리 시 공제회로 전송 불가]
  - ②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 → 사고 등록 → 입력한 학교장 휴대전화로 안내메세지 발송되면 → 학교장은 부여된 아이디로 접속하여 온라인 서명 → 자동 통보 처리

**[주의]** 학교장은 통지를 **지체 없이** 하지 아니하거나 **거짓**으로 통지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[학교안전법 제22조]

### 02 피공제자 및 청구인은 치료 후 청구 서류 준비

-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- 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 (처방전에 의한 경우)
- 진료비 세부명세서
- 청구인(보호자) 통장 사본
- 주민등록표등본
- 청구액 50만원 이상 ▶ 진단서 추가

※ 지급여부 결정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.

### 03 청구서 작성

- 청구 방법은 아래 방법 중 선택
  - ① 청구인이 청구서류를 학교로 제출할 경우 :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으로 청구서 작성 (오프라인, 온라인 선택)
  - ② 청구인이 청구서류를 공제회로 직접 제출할 경우 :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으로 청구서 작성 (오프라인, 온라인 선택)

※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청구서식에 수기 작성 가능

### 04 공제회로 서류 제출

- ② ~ ③ 서류를 취합하여
  - 오프라인 청구 시 : 등기 우편
  - 온라인 청구 시 : 학교안전사고 보상 지원 시스템에 파일 첨부

※ 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→ 3년 (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.)

### 05 심사

-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(필요 시 연장 및 서류 보완 요청 가능)

### 06 결과 통보

- 지급 여부 결정
- ▶ 청구인에게 알림 문자 발송
- ▶ 공제회에서 학교장에게 공제급여결정통보서 발송
- ▶ 학교장은 청구인에게 전달

## 요양급여 [치료 비용] 지급 범위

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

구분	급여	비급여
요양급여 지급 대상 여부	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	일부 항목 지급
	지급대상	

- 급여**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
- 비급여**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항목
- 일부지급** 『학교안전법』 시행규칙 제2조의2 [별표]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규정된 항목

※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 납부한 비용 중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, 비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로 잘못 기재된 경우이거나, 치료 항목이 세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. (예 : 3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, 응급 중상이 아니거나 휴일 및 야간에 일어나지 않은 사고로 내원한 응급실의 응급의료관리료, 의뢰기관의 착오기재 등)

[별표]

구분	치료 항목 및 한도			
치아 보철 (한 대당)	보철	400,000원 범위 내 (2회 인정)		
	레진	120,000원 범위 내 (1회 인정)		
	포스트	124,000원 범위 내 (1회 인정)		
자기공명영상 (MRI)	1회 인정	무통제	인정	홍터 제거술
		물리치료 (도수치료, 체외충격파치료, 산양분사치료 등)		불인정
초음파	인정			

- ▶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장 자주 문의주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.
- ▶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행 전 해당 여부 문의
- ▶ 자기공명영상촬영 및 홍터수술(시술) 등 항목에 따라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전 필요 여부 문의



###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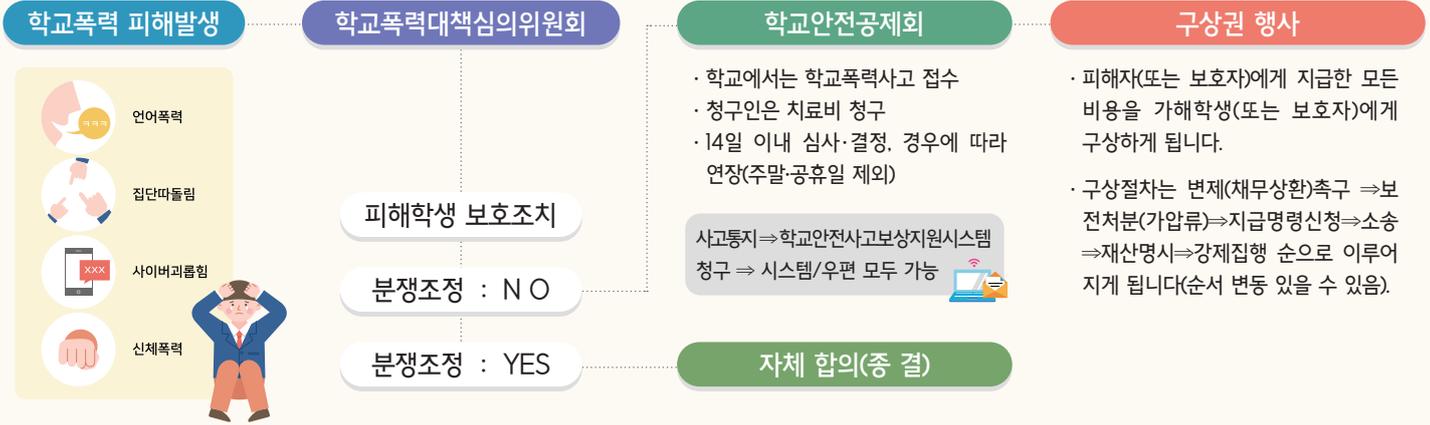
자해 및 자살, 의료기관의 치료지시 거부 및 방해,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, 가해자로부터의 보상, 교육활동이 아닌 경우,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지 않은 질병 등

#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

학교폭력 피해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속한 치료를 위해 『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학생에게 발생한 신체·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공제회가 우선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후 그 비용을 **가해자에게 구상**하는 제도입니다.

학교폭력이란?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

## 처리절차



## 지원 범위 및 기간

구 분	세 부 사 항	인 정 기 간	비 고
심리상담 및 조언	교육감 지정 기관의 심리상담 및 조언비용	상담 및 심리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2년	1년 범위 내 연장 가능
치료를 위한 요양 및 의약품	의료기관·보건소·약국 등에서의 치료비용 및 약제비	2년	1년 범위 내 연장 가능
일시보호	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 보호 비용	30일	

※ 교육감 지정 기관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(열린마당 > 업무협약(MOU) > 업무협약(MOU) 체결현황)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※ 치료비 등 청구액이 통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, 공제회 심사를 거쳐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##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출 서류

학교폭력사고통지(학교)	치료비 청구 시
학교폭력사고발생 통지서	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서
	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또는 회의록	진료비 세부내역서
서약서 및 위임장(피해학생 측)	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, 처방전, 진단서(50만원 이상), 주민등록표등본, 청구인 통장사본

※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## 지원대상 학교

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



#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

『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중대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## 처리절차



## 지원 대상 및 기간

지원 대상	기간
피해 학생·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	1년

※ 지원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은 꼭 공제회에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.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담을 받으실 경우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.  
 ※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,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간 연장 가능

## 지원 대상 학교

유치원, 초등학교·공민학교,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,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,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
## 신청서류

상담 및 치료 지원 신청 시		치료비용 청구 시	
구 분	내 용	구 분	내 용
상담·심리 치료대상자 선정 신청서(원본)	- 본인 또는 학교장이 대리 신청하여 등기우편 발송 -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 날인 불필요	상담·심리 치료비용 청구서 (원본)	- 본인 또는 학교장이 대리 신청하여 등기우편 발송 -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 날인 불필요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원본)	- 대리 신청 시에도 청구인 직접 작성 및 서명	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(원본)	
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(원본)	- 신청인이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	약제비·계산서 영수증 (원본)	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(원본)	- 신청인이 피공제자 본인이 아닌 경우	청구인 통장 표지 (사본)	
진단서 (원본)	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	기타 서류	- 그 밖에 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기타 서류	-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		

※ 자문위원회 및 공제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